

대학원학칙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시행세칙

2023. 3. 1 제정

<심리융합과학대학원 행정실>

제 1조 (목적) 이 시행세칙은 본교 「대학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함) 및 「대학원 학사 운영규정」이 심리융합과학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교육목표) 이 대학원은 개인의 성장발달과 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창의적 능력과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론 및 실무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하여 사회를 주도할 역량을 갖춘 심리전문가 및 지도급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를 한다.

제 3조 (학위과정) 이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 4조 (수업연한 및 재학연한) ①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(5학기)로 한다.

②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한다.

③ 재학연한을 경과한 자는 제적 처리한다.

제 5조 (수업)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, 필요에 따라 공휴일 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.

제 6조 (휴학기간) ① 휴학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,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연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② 군복무, 임신·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제1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복무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.

③ 기타 휴학의 경우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에 준용하며, 심리융합과학대학원장(이하 “대학원장”이라 함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7조 (재입학의 제한) ①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 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.

② 이 대학원에 재학하다가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이 대학원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을 불허한다.

제 8조 (교육과정)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교육과정 일람에 의한다.

제 9 조 (학기별 취득학점) 학기별 학점취득은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상호 학점인정을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서를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제 11 조 (수강신청 정정) 이미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.
- 제 12 조 (학점인정) ①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연구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동일한 것에 한하여 8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② 상호 학점인정을 협약한 본교의 다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과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- 제 13조 (학위수여요건)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공통필수 4학점, 트랙선택 16학점을 포함한 기타과목 8학점 등 총 2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충족하고, 총 평균평점 3.0 이상, 졸업시험 합격한 자로서 졸업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졸업 및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다.
④ 졸업시험 자격요건은 당해학기 2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로서 4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응시회수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.
⑤ 졸업시험은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.
- 제 14조 (학위취소) 이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재의하여 총장이 학위를 취소한다.
- 제 15조 (졸업시험위원회) ① 졸업시험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을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② 졸업시험위원회의 구성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 2인(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)으로 한다.
③ 졸업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 졸업시험에 관한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.
- 제 16조 (결과 보고 및 우수 졸업자 시상) ①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에 졸업시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대학원장은 매년 우수 졸업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.
- 제 17조 (장학금)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심리융합과학대학원 장학금 운영 시행세칙」을 따른다.
- 제 18조 (공개강좌) ① 이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[별지 서식 1]의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② 공개강좌의 명칭 또는 교과목 개설기간, 장소 및 수강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정한다.
- 제 19조 (대학원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② 위원은 심리학부 소속 전체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이루어진다.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한다.
④ 위원회는 본교 「대학원 학사운영규정」에서 명시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⑤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설치·운영규정」을 준

용한다.

제 20조 (준용) 이 시행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1]

제 000 호

증 서

성 명 ○ ○ ○
0000년 00월 00일

위 사람은 본 대학교 심리융합과학대학원
최고위정책과정에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
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.

200 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심리융합과학대학원 원장 ○ ○ 박사 ○
○ ○

위의 증명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.

200 년 월 일

고려대학교 총장 ○ ○ 박사 ○ ○ ○